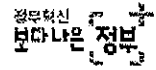
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 세 청



수신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(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길 4)
(경유)

제목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

1.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.
2. 귀 조합이 우리청에 접수한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- 아 래 -

[질의1]

-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[질의2, 3]

-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 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, 자세한 계산방법은 '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203 (2010.04.16.)'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끝.

국 세 청



국세조사관 이은규 팀장 이완희 과장 전결 2020. 7. 3.
협조자 강상식

시행 소비세과-1217 (2020. 7. 3.) 접수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
/ <http://www.nts.go.kr>

전화번호 044 204 3394 팩스번호 050 31101335 / kyou2000@nts.go.kr / 비공개(6,7)